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설유형별 코로나 감경 기준표_v2

작성일: 2023. 4. 20.

- ※ 코로나 감경기준은 2020~2021년에만 적용되며, 2022년은 지표에 기재된 기준대로 평가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공지사항>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인정범위 추가안내(이용자 인권교육)(2020.10.20.)’ 내용과 2023년도 평가지표에 코로나19 감경내용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 **공통지표 중 관련 항목(일반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2023년도 일반시설 공통지표 **※2020~2021년만 감경기준 적용(2022년은 원래 기준대로 평가)**

영역	평가내용	감경내용	
		감경 전	감경 적용 후
(A영역) 시설 및 환경	A1. 시설이용의 안전성 - ② 연 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④ 직원 및 이용자(생활인)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대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A1.② 연 2회 이상 훈련 인정 A1.④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	A1.② 연 1회 훈련 인정 A1.④ 온·오프라인 교육 인정
(B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B5. 직원 교육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 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교육, 법인교육, 대학 및 대학원, 고용보험 환급교육, 연수 등 참여한 시간을 산정한다.	B5.② 온라인교육은 20시간만 인정, 내부강사가 진행한 내부교육은 미인정	B5.② 온라인 교육시간 모두 인정, 내부강사가 진행한 내부교육도 인정
	B9. 직원교육 - ④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자료 마련 및 신입직원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B9.④ “이론 교육 + 실무 실습”을 포함하여 30시간 이상 실시 (단, 이론 교육이 전체 교육 시간의 1/2 이상)	B9.④ 15시간 이상 인정(1/2 감경 조정) (단, 이론 교육이 전체 교육 시간의 1/2 이상)

□ **공통지표 중 관련 항목(공동생활가정: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 2023년도 공동생활가정 공통지표 **※2020~2021년만 감경기준 적용(2022년은 원래 기준대로 평가)**

영역	평가내용	감경내용	
		감경 전	감경 적용 후
(A영역) 시설환경 및 운영	A1. 시설이용의 안전성 - ② 연 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④ 직원 및 이용자(생활인)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대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A1.② 연 2회 이상 훈련 인정 A1.④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	A1.② 연 1회 훈련 인정 A1.④ 온·오프라인 교육 인정
	A3. 직원 교육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 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교육, 법인교육, 대학 및 대학원, 고용보험 환급교육, 연수 등 참여한 시간을 산정한다.	A3.② 온라인교육은 20시간만 인정, 내부강사가 진행한 내부교육은 미인정	A3.② 온라인 교육시간 모두 인정, 내부강사가 진행한 내부교육도 인정
(B영역) 이용자 (생활인)/ 아동의 권리	B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 ③ 이용자(생활인)/아동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교육 실시	B2.③ 집합교육만 인정	B2.③ 온·오프라인 교육 인정

□ 시설유형별 개별지표 중 관련 항목

○ 2023년도 개별지표 ※2020~2021년만 감경기준 적용(2022년은 원래 기준대로 평가)

시설유형	영역	평가내용	감경내용	
			감경 전	감경 적용 후
노숙인 생활시설	(B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B13. 직원 대상 슈퍼비전 - ③ 분기별 1회 이상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기록하고 있다.	B13.③ 분기별 1회 이상 슈퍼비전 실시	B13.③ 반기별 1회(연 2회) 인정(1/2 감경 조정)
	(C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	C7. 사례관리 - ② 월 1회 이상 사례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C7.② 월 1회 이상 사례검토 회의 개최	C7.② 연 6회 인정(1/2 감경 조정)
	(D영역) 생활인의 권리	D6. 인권지킴이단 설치 및 운영(자활시설 미배점) - ③ 인권지킴이단 운영회의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D6.③ 인권지킴이단 운영회의 분기별 1회 대면회의 실시	D6.③ 비대면 회의(서면, 온라인) 인정
정신요양 시설	(C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	C5. 생활인 가족관계 지원 - ③ 시설이 주관하는 가족(보호자) 모임이나 교육이 연 2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C5.③ 연 2회 이상 실시	C5.③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운영 시 인정
		C7. 사례관리 - 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개별 생활인의 사례에 대한 집중적 사례검토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C7.⑤ 사례검토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	C7.⑤ 서면회의 진행 시 인정, 연 6회 인정(1/2 감경 조정)
장애인 복지관	(B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B12. 사업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② 시설은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적인 연간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B12.② 연 2회(상·하반기) 이상 평가 실시	B12.② 연 1회 인정(1/2 감경 조정)
	(C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	C1-2. 사정의 체계성 - ③ 이용자에 대한 진전사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1-2.③ 주기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진전사정 실시(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C1-2.③ 시설의 사정 관련 지침에 근거한 주기의 1/2 인정
		C1-3. 개인별 서비스 - ③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원점검 및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C1-3.③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원점검 및 평가회의 실시	C1-3.③ 연 2회 인정(1/2 감경 조정)
		C2-1.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 ③ 정기적인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C2-1.③ 정기적인 사례관리 회의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C2-1.③ 연 2회 인정(1/2 감경 조정)
		C2-2. 사례관리 지원체계 - ③ 사례관리와 연관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사례관리 회의를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C2-2.③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사례관리 회의를 연 4회 이상 실시	C2-2.③ 연 2회 인정(1/2 감경 조정)

시설유형	영역	평가내용	감경내용	
			감경 전	감경 적용 후
		C4. 지역사회네트워크 - ①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기적 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C4-① 정기적인 모임 실시	C4-① 비대면 의견교환(공문 등)도 인정
	(D영역) 이용자의 권리	D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 ③ 이용자(생활인)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D2.③ 집합교육만 인정	D2.③ 온·오프라인 교육 인정
정신재활 시설	(B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B12.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③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시행한 실적이 있다.	B12.③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이상(상·하반기) 시행	B12.③ 연 1회 평가 인정(1/2 감경 조정)
	(C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	C2. 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 ③ 매월 정기적으로 상담 및 기록을 실시한다.	C2.③ 매월 정기적으로 상담 및 기록을 실시	C2.③ 연 6회 인정(1/2 감경 조정)
		C4. 이용자 가족관계 지원 - ③ 연 2회 이상 가족교육 및 활동을 하고 있다.	C4.③ 연 2회 이상 가족교육 및 활동 진행	C4.③ 연 1회 인정(1/2 감경 조정)
		C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 ③ 아동·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C5.③ 아동·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심층상담 진행	C5.③ 연 6회 인정(1/2 감경 조정)
정신재활 공동생활 가정	(C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	C4. 이용자 가족관계 지원 - ③ 연 2회이상 가족교육 및 활동을 실시한다.	C4.③ 연 2회 이상 실시	C4.③ 연 1회 인정(1/2 감경 조정), 온라인교육도 인정
		C5. 이용자의 자립생활 준비 - ② 입소자 개별 자립생활 목표를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평가하고 있다.	C5-② 연 2회 이상 실시	C5-② 연 1회 인정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C영역) 프로그램 및 서비스	C1. 이용자의 시설 선택과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 ③ 시설은 예비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1.③ 예비방문 서비스 제공 시 인정	C1.③ 2020~2021년은 예비방문 서비스 미제공하여도 인정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설유형별 평가지표 정오표_v2

※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유형별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

작성일: 2023. 4. 20.

□ 공통지표 수정사항(일반시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18	노숙인생활시설	<p>[2023년 각 시설유형별 주요지침]</p> <p>8. 현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종료 후 제출 자료는 모두 미 인정(단, 현장평가 팀과의 합의에 의한 사항은 제외하며, 현장평가 종료 후 제출된 자료에 대한 내용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p>[2023년 각 시설유형별 주요지침]</p> <p>8. 현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평가 시 제출된 자료만 인정 - 현장평가 종료 후 제출자료는 모두 미인정(추가 및 보완 불가) <p>9.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활용하여 진행 예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운영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연동이 불가하거나 정정이 필요할 경우 서면자료로 대체가능 	수정 및 추가	내용 현행화
P19	장애인복지관	<p>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현장평가에서는 기존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평가(향후 평가지표 항목 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태이 명시된 항목(예시 B1.사업비 등)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 예정임) 			
P18	정신요양시설	<p>10. 이의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7일 경과 후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은 현장평가 시 지표 해석 및 견해 차이에 국한되므로, 현장평가 시 제시하지 못한 자료 제출 및 보완, 평가 불만 사항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u>ㄷ.시설운영전반(인터뷰 평가)은 정성평가로써 현장평가위원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u> 			
P18	정신재활시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23	노숙인생활시설	평가항목	A1. (전체공통) 시설이용의 안전성			평가항목	A1. (전체공통) 시설이용의 안전성			수정	배점기준 수정
		평가목표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평가목표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P24	장애인복지관	평가내용	① 시설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필수)			평가내용	① 시설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필수)				
			②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필수)				②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필수)				
			③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				③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				
			④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화재, 지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화재, 지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P23	정신요양시설	배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배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P23	정신재활시설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P25 ~26	노숙인생활시설	구분	소방안전시설	대상 사회복지시설	비고	구분	세부 시설유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별표4] 근거)			수정	법적 기준에 따른 세부사항 수정 및 보완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	33㎡당 1개 설치	노유자 시설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생산물판매시설 제외)				
			스프링클러	600㎡ 이상	600㎡ 미만 미해당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아동, 장애인,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경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생활시설, 그 외 300~500㎡	생활시설 모두 설치, 그 외 연면적 300㎡ 미만 미해당	노유자 생활시설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아동, 장애인,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비상경보설비	400㎡이상	400㎡ 미만 미해당	구분	소방 안전시설	대상 사회복지시설	비고		
			자동화재속보설비	생활시설, 그 외 500㎡이상 층이 있는 시설	생활시설 모두 설치	소화설비	소화기구	모든 시설 중 연면적 33㎡ 이상	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2.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창살인 경우 제외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모든 시설			스프링클러	모든 시설 중 600㎡ 이상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			간이스프링클러	1. 노유자생활시설 2. 그 외 노유자시설 중 300㎡이상 600㎡미만 3. 그 외 노유자시설 중 300㎡미만, 창살이 설치된 시설			
P26 ~27	장애인복지관	피난보조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모든시설							
			비상조명등	지하층 또는 450㎡ 이상 무창층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25 ~26	정신요양시설		<table border="1"> <tr> <td rowspan="4">경보 설비</td> <td>비상 경보 설비</td> <td>1. 모든 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150㎡이상</td> <td></td> </tr> <tr> <td>자동 화재 탐지 시설</td> <td>1. 노유자생활시설 2. 그 외 노유자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td> <td>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td> </tr> <tr> <td>자동 화재 속보 설비</td> <td>1. 노유자생활시설 2. 노유자시설 중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시설</td> <td>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td> </tr> <tr> <td>가스 누설 경보기</td> <td>모든 시설</td> <td></td> </tr> <tr> <td rowspan="3">피난 구조 설비</td> <td>피난 기구</td> <td>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td> <td>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1, 2층은 설치해야 함</td> </tr> <tr> <td>유도등, 유도 표지</td> <td>모든 시설</td> <td></td> </tr> <tr> <td>비상 조명등</td> <td>1. 모든 시설 중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건물 중 연면적 3000㎡이상 2. 또는, 모든 시설 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450㎡이상</td> <td></td> </tr> </table>	경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1. 모든 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150㎡이상		자동 화재 탐지 시설	1. 노유자생활시설 2. 그 외 노유자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	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자동 화재 속보 설비	1. 노유자생활시설 2. 노유자시설 중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시설	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가스 누설 경보기	모든 시설		피난 구조 설비	피난 기구	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1, 2층은 설치해야 함	유도등, 유도 표지	모든 시설		비상 조명등	1. 모든 시설 중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건물 중 연면적 3000㎡이상 2. 또는, 모든 시설 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450㎡이상			
경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1. 모든 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150㎡이상																										
	자동 화재 탐지 시설	1. 노유자생활시설 2. 그 외 노유자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	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자동 화재 속보 설비	1. 노유자생활시설 2. 노유자시설 중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시설	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가스 누설 경보기	모든 시설																										
피난 구조 설비	피난 기구	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1, 2층은 설치해야 함																									
	유도등, 유도 표지	모든 시설																										
	비상 조명등	1. 모든 시설 중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건물 중 연면적 3000㎡이상 2. 또는, 모든 시설 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450㎡이상																										
P26	노숙인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A1-⑤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 소화기는 게이지가 녹색에 있는지, 내용물이 굳어 있는지 확인 필요 ** 피난기구는 3층 이상~11층 미만 건물에 어느 곳에서나 직접 지상 또는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는 통로를 각각 1개 이상 확보하고 있지 않을 시 피난설비(구조대, 완강기,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등)를 갖 추어야 인정	<input type="checkbox"/> A1-⑤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 소화기는 게이지가 녹색에 있는지, 내용물이 굳어 있는지 확인 필요 ** 피난설비: 구조대, 완강기,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등	수정	지표 명확화																							
P26	정신요양시설																											
P27	장애인복지관	<input type="checkbox"/> A1-⑤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A1-⑤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 소화기는 게이지가 녹색에 있는지, 내용물이 굳어 있는지 확인 필요 ** 피난설비: 구조대, 완강기,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등	추가																								
P26	정신재활시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36	노숙인생활시설	B1. (전체공통) 사업비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하여 상위 40%, 중간 30%, 하위 30%에 상대평가로 4, 3, 2점 부여	B1. (전체공통) 사업비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하는 상위 40%, 중간 30%, 하위 30%에 상대평가로, 배점기준에 따라 4, 3, 2점 부여	수정	지표 명확화
P35	장애인복지관				
P35	정신요양시설				
P38	정신재활시설				
P37	노숙인생활시설	B2. (전체공통)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하여 상위 40%, 중간 30%, 하위 30%에 상대평가로 4, 3, 2점 부여	B2. (전체공통)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하는 상위 40%, 중간 30%, 하위 30%에 상대평가로, 배점기준에 따라 4, 3, 2점 부여	수정	지표 명확화
P36	장애인복지관				
P36	정신요양시설				
P39	정신재활시설				
P40	노숙인생활시설	B4.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하여 상위 40%, 중간 30%, 하위 30%에 상대평가로 4, 3, 2점 부여	B4.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하는 상위 40%, 중간 30%, 하위 30%에 상대평가로, 배점기준에 따라 4, 3, 2점 부여	수정	지표 명확화
P39	장애인복지관				
P39	정신요양시설				
P42	정신재활시설				
P41	노숙인생활시설	B5. (전체공통) 직원 교육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하여 상위 40%, 중간 30%, 하위 30%에 상대평가로 4, 3, 2점 부여	B5. (전체공통) 직원 교육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하는 상위 40%, 중간 30%, 하위 30%에 상대평가로, 배점기준에 따라 4, 3, 2점 부여	수정	지표 명확화
P40	장애인복지관				
P40	정신요양시설				
P43	정신재활시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42	노숙인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B5-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산정 ○ 대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배점 : 50%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3년 평균 내·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을 기준에 따라 배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직원 1인당 평균 내·외부교육 시간 = $\frac{\text{㉞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의 내·외부교육시간()시간}}{\text{㉠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 수 ()명}}$ </div>	<input type="checkbox"/> B5-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산정 ○ 대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배점 : 50%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3년 평균 내·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을 기준에 따라 배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직원 1인당 평균 내·외부교육 시간 = $\frac{\text{㉞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의 내·외부교육시간()시간}}{\text{㉠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 수 ()명/36개월}}$ </div>	추가	누락내용 추가												
P41	장애인복지관																
P41	정신요양시설																
P44	정신재활시설																
P43	노숙인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B5-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th> <th style="width: 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타</td> <td></td> <td>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td> </tr> </tbody> </table>	구분	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	비고	기타		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	<input type="checkbox"/> B5-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th> <th style="width: 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타</td> <td></td> <td>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 이동시간 미인정)</td> </tr> </tbody> </table>	구분	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	비고	기타		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 이동시간 미인정)	추가	설명회 기준 세부내용 추가
구분	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		비고														
기타			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														
구분	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		비고														
기타			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 이동시간 미인정)														
P42	장애인복지관																
P42	정신요양시설																
P45	정신재활시설																
P45	노숙인생활시설																
P44	장애인복지관	B6.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하여 상위 40%, 중간 30%, 하위 30%에 상대평가로 4, 3, 2점 부여	B6.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하는 상위 40%, 중간 30%, 하위 30%에 상대평가로, 배점기준에 따라 4, 3, 2점 부여	수정	지표 명확화												
P44	정신요양시설																
P47	정신재활시설																
P48	노숙인생활시설																
P48	장애인복지관	<input type="checkbox"/> B7-③ 3년간 100% 공개채용 여부 확인 ○ 인정범위 -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go.kr), 관련 협회 중 2곳 이상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경우 점수 부여,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2022년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B7-③ 3년간 100% 공개채용 여부 확인 ○ 인정범위 -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go.kr), 관련 협회 중 2곳 이상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경우 점수 부여,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2022년부터 적용)	삭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변경												
P47	정신요양시설																
P50	정신재활시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58	노숙인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B11-④ 직원의 인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회의(또는 간담회) 실시, 내용 공유 확인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input type="checkbox"/> B11-④ 직원의 인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회의(또는 간담회) 실시, 내용 공유 확인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행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추가	지표설명회 내용에 따라 추가
P57	장애인복지관				
P57	정신요양시설				
P60	정신재활시설				
P80	노숙인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D1-②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열람자 지정, 보완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1)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input type="checkbox"/> D1-②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책임자와 취급자 지정, 보완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1) 개인정보 책임자(총괄자)와 취급자(개별종사자) 지정 ...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개인정보 책임자와 취급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수정	명확한 명칭 사용
P81	장애인복지관				
P87	정신요양시설				
P88	정신재활시설				
P94	노숙인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E1. 시설장의 시설운영의 전반적 수준 확인(10점 척도) <input type="radio"/> 평가방법 - 학계 위원은 질문을, 공무원 위원은 녹취하여 평가결과 공표 시까지 보관 - 점수 부여는 위원 2인이 각각 시설장 인터뷰에 대하여 부여	<input type="checkbox"/> E1. 시설장의 시설운영의 전반적 수준 확인(10점 척도) <input type="radio"/> 평가방법 - 학계 위원의 질문을 통해 인터뷰 진행 - 위원 3인(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이 각각 시설장 인터뷰에 대하여 점수 부여 - 평가의견은 시스템 내 상세히 기록	수정	(2차 정오표) 평가방법 조정
P91	장애인복지관				
P99	정신요양시설				
P102	정신재활시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100	노숙인생활시설	[2023년도 영역별 이용자평가 시범도입]			[2023년도 영역별 이용자평가 시범도입]						
		[참고] 영역별 이용자평가 항목별 점수표			[참고] 영역별 이용자평가 항목별 점수표						
		구분	질의내용		점수	구분	질의내용			점수	
		A. 시설 및 환경	A-① 시설 이용의 안전성 A-② 시설 이용의 편리성 A-③ 시설 이용의 쾌적성			A. 시설 및 환경	A-① 시설 이용의 안전성 A-② 시설 이용의 편리성 A-③ 시설 이용의 쾌적성				
P97	장애인복지관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C-①. 시설의 서비스는 나의 욕구를 반영하여 제공한다.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C-①. 시설의 서비스는 나의 욕구를 반영하여 제공한다.				
			C-②. 시설은 정해진 시간약속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요구에 직원은 신속하게 대응한다.				C-②. 시설은 정해진 시간약속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요구에 직원은 신속하게 대응한다.				
			C-③. 서비스의 질(제공환경, 전문성, 자원연계 등)이 뛰어나다.				C-③. 서비스의 질(제공환경, 전문성, 자원연계 등)이 뛰어나다.				
			C-④. 직원은 친절하고 나를 배려한다.				C-④. 직원은 친절하고 나를 배려한다.				
			C-⑤. 내가 제공받은 서비스는 대체로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C-⑤. 내가 제공받은 서비스는 대체로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P105	정신요양시설	D. 이용자의 권리	이용 시설	D-①.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나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고 있다.		D. 이용자의 권리	D-①.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나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고 있다.				
				D-②. 시설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이 시설이용 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D-②. 시설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이 시설이용 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D-③. 서비스 제공 시 나에게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			D-③. 서비스 제공 시 나에게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				
				D-④. 나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시(말)할 수 있다.			D-④. 나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시(말)할 수 있다.				
				D-⑤. 나는 직원에 의해 폭언(욕)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았다.			D-⑤. 나는 직원에 의해 폭언(욕)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았다.				
P108	정신재활시설	생활 시설	D-①.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나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고 있다.		생활 시설	D-①.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나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고 있다.					
			D-②. 나는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			D-②. 나는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					
			D-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이 시설이용 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D-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이 시설이용 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D-④. 서비스 제공 시 나에게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			D-④. 서비스 제공 시 나에게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					
			D-⑤. 나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시(말)할 수 있다.			D-⑤. 나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시(말)할 수 있다.					
			D-⑥. 나는 직원에 의해 폭언(욕)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았다.			D-⑥. 나는 직원에 의해 폭언(욕)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았다.					
사전교육 확인		시설에서 이용자(생활인)에게 이용자(생활인) 평가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평가방법		이용자(생활인) 대상으로 대면평가하였는지 유선평가하였는지 평가방법 확인		<input type="checkbox"/> 대면 <input type="checkbox"/> 유선							
				추가	(2차 정오표) 누락된 내용 추가						

□ 공통지표 수정사항(공동생활가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17	아동공동생활가정	<p>[2023년 각 시설유형별 주요지침]</p> <p>7. 현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종료 후 제출된 자료는 모두 미인정 (단, 현장평가팀과 합의에 의한 사항은 인정하며, 현장평가 종료 후 제출된 자료에 대한 내용은 이의제기 할 수 없음) 	<p>[2023년 각 시설유형별 주요지침]</p> <p>7. 현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평가 시 제출된 자료만 인정 - 현장평가 종료 후 제출자료는 모두 미인정(추가 및 보완 불가) <p>8. 이의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7일 경과 후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은 현장평가 시 지표 해석 및 견해 차이에 국한되므로, 현장평가 시 제시하지 못한 자료 제출 및 보완, 평가 불만 사항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u>D.시설운영전반(인터뷰 평가)은 정성평가로써 현장평가위원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u> <p>9.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활용하여 진행 예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운영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연동이 불가하거나 정정이 필요할 경우 서면자료로 대체가능 	수정 및 추가	내용 현행화
P1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P17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22	이동공동생활가정	평가항목 A1. (전체공통) 시설이용의 안전성 평가목표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필수) ②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필수) ③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 ④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화재, 지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⑤ 시설은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평가항목 A1. (전체공통) 시설이용의 안전성 평가목표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필수) ②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필수) ③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 ④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화재, 지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⑤ 시설은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삭제	배점기준 수정																																																			
P2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배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배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P22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P24 ~25	이동공동생활가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소방안전시설</th> <th>대상 사회복지시설</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소화설비</td> <td>소화기구</td> <td>연면적 33㎡</td> <td>33㎡당 1개 설치</td> </tr> <tr> <td>스프링클러</td> <td>600㎡ 이상</td> <td>600㎡ 미만 미해당</td> </tr> <tr> <td>간이스프링클러</td> <td>생활시설, 그 외 300~500㎡</td> <td>생활시설 모두 설치, 그 외 연면적 300㎡ 미만 미해당</td> </tr> <tr> <td rowspan="3">경보설비</td> <td>비상경보설비</td> <td>400㎡이상</td> <td>400㎡ 미만 미해당</td> </tr> <tr> <td>자동화재수속보설비</td> <td>생활시설, 그 외 500㎡이상 층이 있는 시설</td> <td>생활시설 모두 설치</td> </tr> <tr> <td>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td> <td>모든 시설</td> <td></td> </tr> <tr> <td rowspan="3">피난보조설비</td> <td>피난기구</td> <td>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td> <td></td> </tr> <tr> <td>유도등, 유도표지</td> <td>모든시설</td> <td></td> </tr> <tr> <td>비상조명등</td> <td>지하층 또는 450㎡ 이상 무창층</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소방안전시설	대상 사회복지시설	비고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	33㎡당 1개 설치	스프링클러	600㎡ 이상	600㎡ 미만 미해당	간이스프링클러	생활시설, 그 외 300~500㎡	생활시설 모두 설치, 그 외 연면적 300㎡ 미만 미해당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400㎡이상	400㎡ 미만 미해당	자동화재수속보설비	생활시설, 그 외 500㎡이상 층이 있는 시설	생활시설 모두 설치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모든 시설		피난보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		유도등, 유도표지	모든시설		비상조명등	지하층 또는 450㎡ 이상 무창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3">세부 시설유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별표4] 근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노유자 시설</td> <td>노유자 시설</td> <td colspan="2">·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생산물판매시설 제외)</td> </tr> <tr> <td>노유자 생활시설</td> <td colspan="2">·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아동, 장애인,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td> </tr> <tr> <td rowspan="3">소화설비</td> <td>소화기구</td> <td colspan="2">모든 시설 중 연면적 33㎡ 이상</td> </tr> <tr> <td>스프링클러</td> <td colspan="2">모든 시설 중 600㎡ 이상</td> </tr> <tr> <td>간이스프링클러</td> <td>1. 노유자생활시설 2. 그 외 노유자시설 중 300㎡이상 600㎡미만 3. 그 외 노유자시설 중 300㎡미만, 창살이 설치된 시설</td> <td>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2.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창살인 경우 제외</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 시설유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별표4] 근거)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생산물판매시설 제외)		노유자 생활시설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아동, 장애인,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소화설비	소화기구	모든 시설 중 연면적 33㎡ 이상		스프링클러	모든 시설 중 6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1. 노유자생활시설 2. 그 외 노유자시설 중 300㎡이상 600㎡미만 3. 그 외 노유자시설 중 300㎡미만, 창살이 설치된 시설	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2.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창살인 경우 제외	수정	법적 기준에 따른 세부사항 수정 및 보완
구분	소방안전시설	대상 사회복지시설	비고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	33㎡당 1개 설치																																																										
	스프링클러	600㎡ 이상	600㎡ 미만 미해당																																																										
	간이스프링클러	생활시설, 그 외 300~500㎡	생활시설 모두 설치, 그 외 연면적 300㎡ 미만 미해당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400㎡이상	400㎡ 미만 미해당																																																										
	자동화재수속보설비	생활시설, 그 외 500㎡이상 층이 있는 시설	생활시설 모두 설치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모든 시설																																																											
피난보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																																																											
	유도등, 유도표지	모든시설																																																											
	비상조명등	지하층 또는 450㎡ 이상 무창층																																																											
구분	세부 시설유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별표4] 근거)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생산물판매시설 제외)																																																											
	노유자 생활시설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아동, 장애인,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소화설비	소화기구	모든 시설 중 연면적 33㎡ 이상																																																											
	스프링클러	모든 시설 중 6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1. 노유자생활시설 2. 그 외 노유자시설 중 300㎡이상 600㎡미만 3. 그 외 노유자시설 중 300㎡미만, 창살이 설치된 시설	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2.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창살인 경우 제외																																																										
P24 ~2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소방안전시설</th> <th>대상 사회복지시설</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소화설비</td> <td>소화기구</td> <td>연면적 33㎡</td> <td>33㎡당 1개 설치</td> </tr> <tr> <td>스프링클러</td> <td>600㎡ 이상</td> <td>600㎡ 미만 미해당</td> </tr> <tr> <td>간이스프링클러</td> <td>생활시설, 그 외 300~500㎡</td> <td>생활시설 모두 설치, 그 외 연면적 300㎡ 미만 미해당</td> </tr> <tr> <td rowspan="3">경보설비</td> <td>비상경보설비</td> <td>400㎡이상</td> <td>400㎡ 미만 미해당</td> </tr> <tr> <td>자동화재수속보설비</td> <td>생활시설, 그 외 500㎡이상 층이 있는 시설</td> <td>생활시설 모두 설치</td> </tr> <tr> <td>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td> <td>모든 시설</td> <td></td> </tr> <tr> <td rowspan="3">피난보조설비</td> <td>피난기구</td> <td>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td> <td></td> </tr> <tr> <td>유도등, 유도표지</td> <td>모든시설</td> <td></td> </tr> <tr> <td>비상조명등</td> <td>지하층 또는 450㎡ 이상 무창층</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소방안전시설	대상 사회복지시설	비고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	33㎡당 1개 설치	스프링클러	600㎡ 이상	600㎡ 미만 미해당	간이스프링클러	생활시설, 그 외 300~500㎡	생활시설 모두 설치, 그 외 연면적 300㎡ 미만 미해당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400㎡이상	400㎡ 미만 미해당	자동화재수속보설비	생활시설, 그 외 500㎡이상 층이 있는 시설	생활시설 모두 설치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모든 시설		피난보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		유도등, 유도표지	모든시설		비상조명등	지하층 또는 450㎡ 이상 무창층																									
구분	소방안전시설	대상 사회복지시설	비고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	33㎡당 1개 설치																																																										
	스프링클러	600㎡ 이상	600㎡ 미만 미해당																																																										
	간이스프링클러	생활시설, 그 외 300~500㎡	생활시설 모두 설치, 그 외 연면적 300㎡ 미만 미해당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400㎡이상	400㎡ 미만 미해당																																																										
	자동화재수속보설비	생활시설, 그 외 500㎡이상 층이 있는 시설	생활시설 모두 설치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모든 시설																																																											
피난보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																																																											
	유도등, 유도표지	모든시설																																																											
	비상조명등	지하층 또는 450㎡ 이상 무창층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24 ~25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table border="1"> <tr> <td rowspan="3">경보 설비</td> <td>비상 경보 설비</td> <td>1. 모든 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150㎡이상</td> <td></td> </tr> <tr> <td>자동 화재 탐지 시설</td> <td>1. 노유자생활시설 2. 그 외 노유자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td> <td>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td> </tr> <tr> <td>자동 화재 속보 설비</td> <td>1. 노유자생활시설 2. 노유자시설 중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시설</td> <td>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td> </tr> <tr> <td></td> <td>가스 누설 경보기</td> <td>모든 시설</td> <td></td> </tr> <tr> <td rowspan="3">피난 구조 설비</td> <td>피난 기구</td> <td>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td> <td>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1, 2층은 설치해야 함</td> </tr> <tr> <td>유도등, 유도 표지</td> <td>모든 시설</td> <td></td> </tr> <tr> <td>비상 조명등</td> <td>1. 모든 시설 중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건물 중 연면적 3000㎡이상 2. 또는, 모든 시설 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450㎡이상</td> <td></td> </tr> </table>	경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1. 모든 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150㎡이상		자동 화재 탐지 시설	1. 노유자생활시설 2. 그 외 노유자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	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자동 화재 속보 설비	1. 노유자생활시설 2. 노유자시설 중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시설	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가스 누설 경보기	모든 시설		피난 구조 설비	피난 기구	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1, 2층은 설치해야 함	유도등, 유도 표지	모든 시설		비상 조명등	1. 모든 시설 중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건물 중 연면적 3000㎡이상 2. 또는, 모든 시설 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450㎡이상			
			경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1. 모든 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150㎡이상																							
자동 화재 탐지 시설	1. 노유자생활시설 2. 그 외 노유자시설 중 연면적 400㎡이상	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자동 화재 속보 설비	1. 노유자생활시설 2. 노유자시설 중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시설	1. 노유자생활시설 모두 설치 *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평가, 노인 복지시설은 무조건 설치																											
	가스 누설 경보기	모든 시설																											
피난 구조 설비	피난 기구	모든 층(피난층, 1~2층, 11층 이상 제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1, 2층은 설치해야 함																										
	유도등, 유도 표지	모든 시설																											
	비상 조명등	1. 모든 시설 중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건물 중 연면적 3000㎡이상 2. 또는, 모든 시설 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450㎡이상																											
P25	이동공동생활가정	□ A1-⑤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 A1-⑤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 소화기는 게이지가 녹색에 있는지, 내용물이 굳어 있는지 확인 필요 ** 피난설비: 구조대, 완강기,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등	추가	지표 명확화																								
P2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P25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P28	이동공동생활가정	A3. (전체공통) 직원 교육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개별 및 법인운영시설 별도 그룹핑)하여 상위30%, 중간20%, 하위20%, 최하위 30%에 상대평가로 배점 부여	A3. (전체공통) 직원 교육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 전체 데이터 취합 후 별도 분석(개별 및 법인운영시설 별도 그룹핑)하는 상위30%, 중간20%, 하위20%, 최하위 30%에 상대평가로 배점 부여	추가	지표 명확화																								
P2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P28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P29	이동공동생활가정	□ A3-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산정 ○ 대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A3-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산정 ○ 대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추가	누락내용 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2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배점 : 50%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3년 평균 내·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을 기준에 따라 배점	○ 배점 : 50%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3년 평균 내·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을 기준에 따라 배점														
P29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table border="1"> <tr> <td>직원 1인당 평균 내·외부교육 시간</td> <td>=</td> <td> $\frac{\text{㉞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의 내·외부교육시간()시간}}{\text{㉠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 수 ()명}}$ </td> </tr> </table>	직원 1인당 평균 내·외부교육 시간	=	$\frac{\text{㉞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의 내·외부교육시간()시간}}{\text{㉠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 수 ()명}}$	<table border="1"> <tr> <td>직원 1인당 평균 내·외부교육 시간</td> <td>=</td> <td> $\frac{\text{㉞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의 내·외부교육시간()시간}}{\text{㉠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 수 ()명/36개월}}$ </td> </tr> </table>	직원 1인당 평균 내·외부교육 시간	=	$\frac{\text{㉞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의 내·외부교육시간()시간}}{\text{㉠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 수 ()명/36개월}}$								
직원 1인당 평균 내·외부교육 시간	=	$\frac{\text{㉞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의 내·외부교육시간()시간}}{\text{㉠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 수 ()명}}$															
직원 1인당 평균 내·외부교육 시간	=	$\frac{\text{㉞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의 내·외부교육시간()시간}}{\text{㉠ 2020년+2021년+2022년 월별 확보 직원 수 ()명/36개월}}$															
P30	이동공동생활가정	□ A3-② 외부교육시간 인정기준	□ A3-② 외부교육시간 인정기준														
P3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타</td> <td></td> <td>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td> </tr> </tbody> </table>	구분	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	비고	기타		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타</td> <td></td> <td>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 이동시간 미인정)</td> </tr> </tbody> </table>	구분	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	비고	기타		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 이동시간 미인정)	추가	설명회 기준 세부내용 추가
구분	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	비고															
기타		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															
구분	최대 인정 범위(1인기준)	비고															
기타		기관방문/우수시설 방문 인정(실제 시설방문 시간만 인정, 이동시간 미인정)															
P30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P31	이동공동생활가정	□ A4-② 3년 간 100% 공개채용 여부 확인 ○ 인정범위 -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go.kr), 관련 협회 중 2곳 이상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경우 점수 부여,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2022년부터 적용)	□ A4-② 3년 간 100% 공개채용 여부 확인 ○ 인정범위 -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go.kr), 관련 협회 중 2곳 이상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경우 점수 부여,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2022년부터 적용)														
P3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삭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변경												
P31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P41	이동공동생활가정	B1-②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열람자 지정, 보완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	B1-②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책임자와 취급자 지정, 보완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														
P4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인정범위: ... (1)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 평가자료: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 인정범위: ... (1) 개인정보 책임자(총괄자)와 취급자(개별종사자) 지정... ○ 평가자료: 개인정보 책임자와 취급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수정	명확한 명칭 사용												
P41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65	이동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D1. 시설장의 시설운영의 전반적 수준 확인 <input type="radio"/> 평가방법 - 학계위원이 질문, 현장위원은 인터뷰 내용을 기록 및 녹취하여 평가결과 공표 시까지 보관, 점수는 현장평가위원 2인이 각각 부여	<input type="checkbox"/> D1. 시설장의 시설운영의 전반적 수준 확인 <input type="radio"/> 평가방법 - 학계 위원 3인의 질문을 통해 인터뷰 진행 - 위원 3인(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이 각각 시설장 인터뷰에 대하여 점수 부여 - 평가의견은 시스템 내 상세히 기록	수정	(2차 정오표) 평가방법 조정
P5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P63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 개별지표 수정사항

1. 정신요양시설 수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11~12	<p>□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평가지표 비교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2020년도 지표</th> <th>구분</th> <th>2023년도 지표</th> </tr> </thead> <tbody> <tr> <td>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td> <td>수정</td> <td>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td> </tr> <tr> <td>B9. 직원교육</td> <td>유지</td> <td>B10. 직원교육</td> </tr> <tr> <td>B10. 직원복지</td> <td>유지</td> <td>B11. 직원복지</td> </tr> <tr> <td>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td> <td>유지</td> <td>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td> </tr> <tr> <td>E4. 지역사회 연계활동</td> <td>이동</td> <td>C10. 지역사회 연계활동</td> </tr> </tbody> </table>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	B9. 직원교육	유지	B10.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1. 직원복지	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유지	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E4. 지역사회 연계활동	이동	C10. 지역사회 연계활동	<p>□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평가지표 비교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2020년도 지표</th> <th>구분</th> <th>2023년도 지표</th> </tr> </thead> <tbody> <tr> <td>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td> <td>수정</td> <td>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td> </tr> <tr> <td>B9. 직원교육</td> <td>유지</td> <td>B9. 직원교육</td> </tr> <tr> <td>B10. 직원복지</td> <td>유지</td> <td>B10. 직원복지</td> </tr> <tr> <td>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E4. 지역사회 연계활동</td> <td>이동</td> <td>C9. 지역사회 연계활동</td> </tr> </tbody> </table>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	B9. 직원교육	유지	B9.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0. 직원복지	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삭제	(삭제)	E4. 지역사회 연계활동	이동	C9. 지역사회 연계활동	수정	오타 수정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																																						
B9. 직원교육	유지	B10.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1. 직원복지																																						
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유지	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E4. 지역사회 연계활동	이동	C10. 지역사회 연계활동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																																						
B9. 직원교육	유지	B9.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0. 직원복지																																						
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삭제	(삭제)																																						
E4. 지역사회 연계활동	이동	C9. 지역사회 연계활동																																						
P50	<p>□ B8-④ 최고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22.12.31. 현재 ○ 인정범위 : 최고중간관리자가 2022.12.31.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증 취득한 경우 점수 부여 	<p>□ B8-④ 최고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22.12.31. 현재 ○ 인정범위 : 최고중간관리자가 2022.12.31.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증 취득한 경우 점수 부여 	수정	누락내용 추가																																				
P61	<p>B14.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수준의 적정성 및 전문성 [배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4점) : 5개 항목에 해당된다. • 양호(3점) : 4개 항목에 해당된다. • 보통(3점) : 3개 항목에 해당된다. • 미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p>B14.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수준의 적정성 및 전문성 [배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4점) : 5개 이상 항목에 해당된다. • 양호(3점) : 4개 항목에 해당된다. • 보통(2점) : 3개 항목에 해당된다. • 미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수정	오타 수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61	<p><input type="checkbox"/> B14-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인당 생활인 100명 이하 여부 계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frac{\text{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배치수준}}{\text{2022.1.1.~2022.12.31. 월평균 생활인 수}} = \frac{\text{정신건강전문요원}}{\text{2022.1.1.~2022.12.31. 정신건강전문요원}} = () \text{명}$ </div> <p>○ 산정방법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현원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미함</p>	<p><input type="checkbox"/> B14-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인당 생활인 100명 이하 여부 계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frac{\text{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배치수준}}{\text{2022.1.1.~2022.12.31. 월평균 생활인 수}} = \frac{\text{정신건강전문요원 수}}{\text{2022.1.1.~2022.12.31. 월평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 = () \text{명}$ </div> <p>○ 산정방법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현원 기준 월평균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미함</p>	추가	지표설명의 명확화
P68	<p><input type="checkbox"/> C1-③ 입소자의 초기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실시 여부 확인</p> <p>○ 평가자료 : 개인별 개별계획(19년도 자료 적용), 상담일지, 관찰일지(체크리스트), 관련문서</p>	<p><input type="checkbox"/> C1-③ 입소자의 초기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실시 여부 확인</p> <p>○ 평가자료 : 개인별 개별계획(19년도 자료 적용), 상담일지, 관찰일지(체크리스트), 관련문서</p>	삭제	지표설명의 명확화
P73	<p><input type="checkbox"/> C4-④ 생활인에 대한 건강상담 및 기록 여부 확인</p> <p>○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의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내용(신체질환, 노인성·퇴행성질환·당뇨·암·결핵·치과질환 상담, 건강검진결과 관련 상담 등)이 월 1회 이상 기록된 문서가 있어야 점수 부여(단,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실시한 경우 건강상담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점수 부여) - 생활인 모두에 대한 상담이 있어야 하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생활인에 대해서는 관찰기록이 있어야 점수 부여 상담내용에 '정신질환' 추가 필요 	<p><input type="checkbox"/> C4-④ 생활인에 대한 건강상담 및 기록 여부 확인</p> <p>○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의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내용(정신질환, 신체질환, 노인성·퇴행성질환·당뇨·암·결핵·치과질환 상담, 건강검진결과 관련 상담 등)이 월 1회 이상 기록된 문서가 있어야 점수 부여(단,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실시한 경우 건강상담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점수 부여) - 생활인 모두에 대한 상담이 있어야 하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생활인에 대해서는 관찰기록이 있어야 점수 부여 상담내용에 '정신질환' 추가 필요 	수정	지표설명의 명확화
P80	<p>C8.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p> <p>※ 프로그램은 평가기간 2022년 1년 동안 진행된 사업 중 시설에서 제출한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p>	<p>C8.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p> <p>※ 2022년의 경우 시설에서 제출한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p>	수정	지표설명의 명확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91	<input type="checkbox"/> D2-③ 이용자(생활인) 대상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 1회 이상 실시 확인 <input type="checkbox"/> 인정범위 - 집합교육만 가능(2020~2021년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	<input type="checkbox"/> D2-③ 이용자(생활인) 대상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 1회 이상 실시 확인 <input type="checkbox"/> 인정범위 - 집합교육만 가능(2020~2021년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	정정	(2차 정오표) 정오표_v1(3.29.)에서 추가된 내용 삭제

2. 아동공동생활가정 수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34	<input type="checkbox"/> A5-①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22.12.31.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시설장이 2022.12.31.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면 점수 부여	<input type="checkbox"/> A5-①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22.12.31.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시설장이 2022.12.31.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면 점수 부여	삭제	지표 명확화
P36	<input type="checkbox"/> A6-⑤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 및 시행 여부 확인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단 1인 시설은 본 항목 인정	<input type="checkbox"/> A6-⑤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 및 시행 여부 확인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단 1인 시설은 본 항목 인정	수정 및 삭제	(2차 정오표) 평가 대상기간 수정
P53	[평가내용] ③ 매월 정기적으로 상담 및 기록을 실시한다. <input type="checkbox"/> C2-③ 매월 정기적인 상담 및 기록내용 확인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평가내용] ③ 매월 정기적으로 상담 및 기록을 실시한다. <input type="checkbox"/> C2-③ 매월 정기적인 상담 및 기록내용 확인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수정 및 삭제	(2차 정오표) 인정범위 정정

3. 정신재활시설 수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7	<p>■ 2023년도 평가지표 세부유형별 지표 수 및 배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평가영역</th> <th rowspan="3">배점</th> <th colspan="7">시설 유형별 지표수(개)</th> <th rowspan="3">총합시설</th> </tr> <tr> <th colspan="3">이용시설</th> <th colspan="4">입소시설</th> </tr> <tr> <th>주간 재활</th> <th>직업 재활</th> <th>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th> <th>생활</th> <th>중독자 재활</th> <th>지역 사회 전환</th> <th></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30</td> <td>31</td> <td>29</td> <td>29</td> <td>29</td> <td>29</td> <td>30</td> </tr> <tr> <td>A. 시설 및 환경</td> <td>10</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r> <tr> <td>B. 재정 및 조직운영</td> <td>30</td> <td>12</td> <td>12</td> <td>12</td> <td>12</td> <td>12</td> <td>12</td> <td>12</td> </tr> <tr> <td>C. 프로그램 및 서비스</td> <td>35</td> <td>8</td> <td>9</td> <td>7</td> <td>7</td> <td>7</td> <td>7</td> <td>8</td> </tr> <tr> <td>D. 이용자의 권리</td> <td>20</td> <td>4</td> <td>4</td> <td>4</td> <td>4</td> <td>4</td> <td>4</td> <td>4</td> </tr> <tr> <td>E. 시설운영전반</td> <td>5</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r> </tbody> </table>	평가영역	배점	시설 유형별 지표수(개)							총합시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간 재활	직업 재활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생활	중독자 재활	지역 사회 전환		계	100	30	31	29	29	29	29	30	A. 시설 및 환경	10	3	3	3	3	3	3	3	B. 재정 및 조직운영	30	12	12	12	12	12	12	12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8	9	7	7	7	7	8	D. 이용자의 권리	20	4	4	4	4	4	4	4	E. 시설운영전반	5	3	3	3	3	3	3	3	<p>■ 2023년도 평가지표 세부유형별 지표 수 및 배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평가영역</th> <th rowspan="3">배점</th> <th colspan="7">시설 유형별 지표수(개)</th> <th rowspan="3">총합시설</th> </tr> <tr> <th colspan="3">이용시설</th> <th colspan="4">입소시설</th> </tr> <tr> <th>주간 재활</th> <th>직업 재활 (*생산물 판매 포함)</th> <th>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th> <th>생활</th> <th>중독자 재활</th> <th>지역 사회 전환</th> <th></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30</td> <td>31(28)</td> <td>29</td> <td>29</td> <td>29</td> <td>29</td> <td>30</td> </tr> <tr> <td>A. 시설 및 환경</td> <td>10</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r> <tr> <td>B. 재정 및 조직운영</td> <td>30</td> <td>12</td> <td>12</td> <td>12</td> <td>12</td> <td>12</td> <td>12</td> <td>12</td> </tr> <tr> <td>C. 프로그램 및 서비스</td> <td>35</td> <td>8</td> <td>9(6)</td> <td>7</td> <td>7</td> <td>7</td> <td>7</td> <td>8</td> </tr> <tr> <td>D. 이용자의 권리</td> <td>20</td> <td>4</td> <td>4</td> <td>4</td> <td>4</td> <td>4</td> <td>4</td> <td>4</td> </tr> <tr> <td>E. 시설운영전반</td> <td>5</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d>3</td> </tr> </tbody> </table> <p>※ 생산물판매시설 C. 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 해당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평가지표</th> <th>해당여부</th> </tr> </thead> <tbody> <tr> <td>C1. 이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td> <td>-</td> </tr> <tr> <td>C2. 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td> <td>해당</td> </tr> <tr> <td>C3. 이용자 건강지원</td> <td>해당</td> </tr> <tr> <td>C4. 이용자 가족관계 지원</td> <td>해당</td> </tr> <tr> <td>C5.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td> <td>-</td> </tr> <tr> <td>C6.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지원</td> <td>-</td> </tr> <tr> <td>C7. 직업재활 활동 및 적응지원</td> <td>-</td> </tr> <tr> <td>C8. 직무훈련 및 임금지급</td> <td>-</td> </tr> <tr> <td>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td> <td>해당</td> </tr> <tr> <td>C10. 프로그램 수행 및 평가</td> <td>해당</td> </tr> <tr> <td>C11.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td> <td>해당</td> </tr> </tbody> </table>	평가영역	배점	시설 유형별 지표수(개)							총합시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간 재활	직업 재활 (*생산물 판매 포함)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생활	중독자 재활	지역 사회 전환		계	100	30	31(28)	29	29	29	29	30	A. 시설 및 환경	10	3	3	3	3	3	3	3	B. 재정 및 조직운영	30	12	12	12	12	12	12	12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8	9(6)	7	7	7	7	8	D. 이용자의 권리	20	4	4	4	4	4	4	4	E. 시설운영전반	5	3	3	3	3	3	3	3	평가지표	해당여부	C1. 이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	-	C2. 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해당	C3. 이용자 건강지원	해당	C4. 이용자 가족관계 지원	해당	C5.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	C6.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	C7. 직업재활 활동 및 적응지원	-	C8. 직무훈련 및 임금지급	-	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해당	C10. 프로그램 수행 및 평가	해당	C11.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해당	추가	생산물판매시설 포함
평가영역	배점			시설 유형별 지표수(개)								총합시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간 재활	직업 재활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생활	중독자 재활	지역 사회 전환																																																																																																																																																																																	
계	100	30	31	29	29	29	29	30																																																																																																																																																																																
A. 시설 및 환경	10	3	3	3	3	3	3	3																																																																																																																																																																																
B. 재정 및 조직운영	30	12	12	12	12	12	12	12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8	9	7	7	7	7	8																																																																																																																																																																																
D. 이용자의 권리	20	4	4	4	4	4	4	4																																																																																																																																																																																
E. 시설운영전반	5	3	3	3	3	3	3	3																																																																																																																																																																																
평가영역	배점	시설 유형별 지표수(개)							총합시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간 재활	직업 재활 (*생산물 판매 포함)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생활	중독자 재활	지역 사회 전환																																																																																																																																																																																	
계	100	30	31(28)	29	29	29	29	30																																																																																																																																																																																
A. 시설 및 환경	10	3	3	3	3	3	3	3																																																																																																																																																																																
B. 재정 및 조직운영	30	12	12	12	12	12	12	12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8	9(6)	7	7	7	7	8																																																																																																																																																																																
D. 이용자의 권리	20	4	4	4	4	4	4	4																																																																																																																																																																																
E. 시설운영전반	5	3	3	3	3	3	3	3																																																																																																																																																																																
평가지표	해당여부																																																																																																																																																																																							
C1. 이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	-																																																																																																																																																																																							
C2. 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해당																																																																																																																																																																																							
C3. 이용자 건강지원	해당																																																																																																																																																																																							
C4. 이용자 가족관계 지원	해당																																																																																																																																																																																							
C5.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																																																																																																																																																																																							
C6.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																																																																																																																																																																																							
C7. 직업재활 활동 및 적응지원	-																																																																																																																																																																																							
C8. 직무훈련 및 임금지급	-																																																																																																																																																																																							
C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해당																																																																																																																																																																																							
C10. 프로그램 수행 및 평가	해당																																																																																																																																																																																							
C11.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해당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11~12	<input type="checkbox"/>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평가지표 비교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2020년도 지표</th> <th>구분</th> <th>2023년도 지표</th> </tr> </thead> <tbody> <tr> <td>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td> <td>수정</td> <td>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td> </tr> <tr> <td>B9. 직원교육</td> <td>유지</td> <td>B10. 직원교육</td> </tr> <tr> <td>B10. 직원복지</td> <td>유지</td> <td>B11. 직원복지</td> </tr> <tr> <td>C11. [생활시설, 종합시설 중 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C12. 이용종료 및 사후관리</td> <td>통합</td> <td>C1. 이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td> </tr> </tbody> </table>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	B9. 직원교육	유지	B10.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1. 직원복지	C11. [생활시설, 종합시설 중 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C12. 이용종료 및 사후관리	통합	C1. 이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	<input type="checkbox"/>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평가지표 비교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2020년도 지표</th> <th>구분</th> <th>2023년도 지표</th> </tr> </thead> <tbody> <tr> <td>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td> <td>수정</td> <td>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td> </tr> <tr> <td>B9. 직원교육</td> <td>유지</td> <td>B9. 직원교육</td> </tr> <tr> <td>B10. 직원복지</td> <td>유지</td> <td>B10. 직원복지</td> </tr> <tr> <td>C11. [생활시설, 종합시설 중 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C12. 이용종료 및 사후관리</td> <td>통합</td> <td>C1. [생활시설, 종합시설 중 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이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td> </tr> </tbody> </table>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	B9. 직원교육	유지	B9.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0. 직원복지	C11. [생활시설, 종합시설 중 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C12. 이용종료 및 사후관리	통합	C1. [생활시설, 종합시설 중 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이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	수정	오타 수정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																																
B9. 직원교육	유지	B10.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1. 직원복지																																
C11. [생활시설, 종합시설 중 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C12. 이용종료 및 사후관리	통합	C1. 이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																																
B9. 직원교육	유지	B9.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0. 직원복지																																
C11. [생활시설, 종합시설 중 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C12. 이용종료 및 사후관리	통합	C1. [생활시설, 종합시설 중 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이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																																
P16	<p>[정신재활시설 평가 주요지침]</p> <p>1. 직원의 범위</p> <p>○ 월별 확보 직원 수</p> <p>- B3, B4, B5, B6 : 경상보조금, 자부담,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단, 정규직의 경우 주 40시간미만 근무자를 포함하며, 경상보조금 인력 중 법정직원 수 외의 인력은 직원 수에서 제외)</p>	<p>[정신재활시설 평가 주요지침]</p> <p>1. 직원의 범위</p> <p>○ 월별 확보 직원 수</p> <p>- B3, B4, B5, B6 : 경상보조금, 자부담, 기타보조금 등 재원에 상관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단, 정규직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를 포함하며, 경상보조금 인력 중 법정직원 수 외의 인력은 직원 수에서 제외)</p>	삭제	지표 명확화																														
P64	C1. [생활시설, 종합시설]이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	C1. [생활시설, 종합시설 중 생활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이용자의 입·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	삭제 정정	정오표 재정정 * (21.2.17.) 한국사회정보원에서 삭제 정오표 게시했었음																														
P92	<input type="checkbox"/> D2-③ 이용자(생활인) 대상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 1회 이상 실시 확인 <input type="checkbox"/> 인정범위 - 집합교육만 가능(2020~2021년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	<input type="checkbox"/> D2-③ 이용자(생활인) 대상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 1회 이상 실시 확인 <input type="checkbox"/> 인정범위 — 집합교육만 가능(2020~2021년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	정정	(2차 정오표) 정오표_v1(3.29.)에서 추가된 내용 삭제																														

4. 노숙인생활시설 수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11~12	<p>□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평가지표 비교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2020년도 지표</th> <th>구분</th> <th>2023년도 지표</th> </tr> </thead> <tbody> <tr> <td>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td> <td>수정</td> <td>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td> </tr> <tr> <td>B9. 직원교육</td> <td>유지</td> <td>B10. 직원교육</td> </tr> <tr> <td>B10. 직원복지</td> <td>유지</td> <td>B11. 직원복지</td> </tr> <tr> <td>C4. [요양/재활시설]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td> <td>유지</td> <td>C4. [요양/재활시설]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td> </tr> </tbody> </table>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	B9. 직원교육	유지	B10.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1. 직원복지	C4. [요양/재활시설]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유지	C4. [요양/재활시설]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p>□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평가지표 비교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2020년도 지표</th> <th>구분</th> <th>2023년도 지표</th> </tr> </thead> <tbody> <tr> <td>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td> <td>수정</td> <td>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td> </tr> <tr> <td>B9. 직원교육</td> <td>유지</td> <td>B9. 직원교육</td> </tr> <tr> <td>B10. 직원복지</td> <td>유지</td> <td>B10. 직원복지</td> </tr> <tr> <td>C4. [요양/재활시설]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td> <td>유지</td> <td>C3. [재활시설] 원내 재활 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td> </tr> </tbody> </table>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	B9. 직원교육	유지	B9.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0. 직원복지	C4. [요양/재활시설]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유지	C3. [재활시설] 원내 재활 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수정	오타 수정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																																
B9. 직원교육	유지	B10.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1. 직원복지																																
C4. [요양/재활시설]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유지	C4. [요양/재활시설]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																																
B9. 직원교육	유지	B9.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0. 직원복지																																
C4. [요양/재활시설]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유지	C3. [재활시설] 원내 재활 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P68	<p>□ C3-② 위해요소가 없는 근로환경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작업장의 지도점검 결과 위해요소 행정명령(개선 명령 이상) 확인 시 점수 미 부여(단, 경고 또는 주의조치는 점수 부여) - 근로환경(최저급여수준 준수,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생활인별로 받았을 경우 점수 부여) 	<p>□ C3-② 위해요소가 없는 근로환경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작업장의 지도점검 결과 위해요소 행정명령(개선 명령 이상) 확인 시 점수 미 부여(단, 경고 또는 주의조치는 점수 부여) - 근로환경(최저급여수준 준수,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생활인별로 받았을 경우 점수 부여)2022년부터 적용 	추가	지표설명회에 따라 범위 축소																														
P84	<p>□ D2-③ 이용자(생활인) 대상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 1회 이상 실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만 가능(2020~2021년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 	<p>□ D2-③ 이용자(생활인) 대상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 1회 이상 실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만 가능(2020~2021년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 	정정	(2차 정오표) 정오표_v1(3.29.)에서 추가된 내용 삭제																														

5. 장애인복지관 수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11~12	<input type="checkbox"/>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평가지표 비교표 <table border="1"> <thead> <tr> <th>2020년도 지표</th> <th>구분</th> <th>2023년도 지표</th> </tr> </thead> <tbody> <tr> <td>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td> <td>수정</td> <td>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td> </tr> <tr> <td>B9. 직원교육</td> <td>유지</td> <td>B10. 직원교육</td> </tr> <tr> <td>B10. 직원복지</td> <td>유지</td> <td>B11. 직원복지</td> </tr> </tbody> </table>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	B9. 직원교육	유지	B10.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1. 직원복지	<input type="checkbox"/>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평가지표 비교표 <table border="1"> <thead> <tr> <th>2020년도 지표</th> <th>구분</th> <th>2023년도 지표</th> </tr> </thead> <tbody> <tr> <td>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td> <td>수정</td> <td>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td> </tr> <tr> <td>B9. 직원교육</td> <td>유지</td> <td>B9. 직원교육</td> </tr> <tr> <td>B10. 직원복지</td> <td>유지</td> <td>B10. 직원복지</td> </tr> </tbody> </table>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	B9. 직원교육	유지	B9.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0. 직원복지	수정	오타 수정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9. 직원의 권리 및 안전 보장																										
B9. 직원교육	유지	B10.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1. 직원복지																										
2020년도 지표	구분	2023년도 지표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11. 직원의 인권 및 인권보호																										
B9. 직원교육	유지	B9. 직원교육																										
B10. 직원복지	유지	B10. 직원복지																										
P60	B13.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내용</th> <th colspan="2">전체 직원 대비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은 어떠한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배점기준</td> <td>우수(4점)</td> <td>(민간) 3.1% / (공공) 3.4%</td> </tr> <tr> <td>양호(3점)</td> <td>(민간) 2% ~ 3.1% 미만 (공공) 2% ~ 3.4% 미만</td> </tr> <tr> <td>보통(2점)</td> <td>1% 이상 ~ 2%</td> </tr> <tr> <td>미흡(1점)</td> <td>1% 미만</td> </tr> </tbody> </table>	평가내용	전체 직원 대비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은 어떠한가?		배점기준	우수(4점)	(민간) 3.1% / (공공) 3.4%	양호(3점)	(민간) 2% ~ 3.1% 미만 (공공) 2% ~ 3.4% 미만	보통(2점)	1% 이상 ~ 2%	미흡(1점)	1% 미만	B13.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내용</th> <th colspan="2">전체 직원 대비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은 어떠한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배점기준</td> <td>우수(4점)</td> <td>(민간) 3.1% 이상 / (공공) 3.4% 이상</td> </tr> <tr> <td>양호(3점)</td> <td>(민간) 2% 이상 ~ 3.1% 미만 (공공) 2% 이상 ~ 3.4% 미만</td> </tr> <tr> <td>보통(2점)</td> <td>1% 이상 ~ 2% 미만</td> </tr> <tr> <td>미흡(1점)</td> <td>1% 미만</td> </tr> </tbody> </table>	평가내용	전체 직원 대비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은 어떠한가?		배점기준	우수(4점)	(민간) 3.1% 이상 / (공공) 3.4% 이상	양호(3점)	(민간) 2% 이상 ~ 3.1% 미만 (공공) 2% 이상 ~ 3.4% 미만	보통(2점)	1% 이상 ~ 2% 미만	미흡(1점)	1% 미만	추가	누락내용 추가
평가내용	전체 직원 대비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은 어떠한가?																											
배점기준	우수(4점)	(민간) 3.1% / (공공) 3.4%																										
	양호(3점)	(민간) 2% ~ 3.1% 미만 (공공) 2% ~ 3.4% 미만																										
	보통(2점)	1% 이상 ~ 2%																										
	미흡(1점)	1% 미만																										
평가내용	전체 직원 대비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은 어떠한가?																											
배점기준	우수(4점)	(민간) 3.1% 이상 / (공공) 3.4% 이상																										
	양호(3점)	(민간) 2% 이상 ~ 3.1% 미만 (공공) 2% 이상 ~ 3.4% 미만																										
	보통(2점)	1% 이상 ~ 2% 미만																										
	미흡(1점)	1% 미만																										
P70	<input type="checkbox"/> C2-1-③ 정기적인 사례관리 회의 개최 확인 ○ 인정범위 : 분기별 1회 이상 사례회의를 개최한 경우 점수 부여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정기적 사례회의 실시한 경우 인정)	<input type="checkbox"/> C2-1-③ 정기적인 사례관리 회의 개최 확인 ○ 인정범위 : 분기별 1회 이상 사례회의를 개최한 경우 점수 부여 (2022년부터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정기적 사례회의 실시한 경우 인정)	추가	지표 기준 명확화 (지표 설명회 기준)																								

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수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정사유
P34	<input type="checkbox"/> A5-②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정신건강)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A5-②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정신건강)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여부 확인	삭제	지표 명확화
P36	<input type="checkbox"/> A6-⑤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 및 시행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A6-⑤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 및 시행 여부 확인 ※ 단 1인 시설은 본 항목 인정	추가	지표 명확화